

<3.31(목) 석간용 (인터넷 3.31(목) 06:00이후>



보 도 자 료

▶ 근로개선정책과장 권태성
사무관 최대술

- ▶ 2011. 3. 31(목) 배포
- ▶ 총 5 쪽

TEL: 2110-7392
E-MAIL : cs4349@moel.go.kr
F A X : 02-503-6692

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 고용노동부는 31일(목)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8일(금) 오전 11시 서울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 B홀)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한다.
 - 이 날 회의에는 박재완 장관이 참석하여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 의결하여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붙임 1. 최저임금 제도 개요.
2. 최저임금위원회 개요.
3.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끝.

<붙임 1>

최저임금 제도 개요

□ 목 적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근거: 헌법 제32조제1항, 최저임금법('88.1.1 시행)

□ 적용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10%) 및 감시·단속직 근로자(20%, '11년까지) 감액(승인),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적용 제외(인가)

□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 고려

□ 결정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청(3.31)→ 최저임금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 심의·의결(90일 이내, 6.29)→ 고용노동부장관 고시(8.5)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적용주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주 40시간 사업장 월 902,880원)

* 2010년도(시급 4,110원) 대비 5.1% 인상(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임금 상승률 등을 균형있게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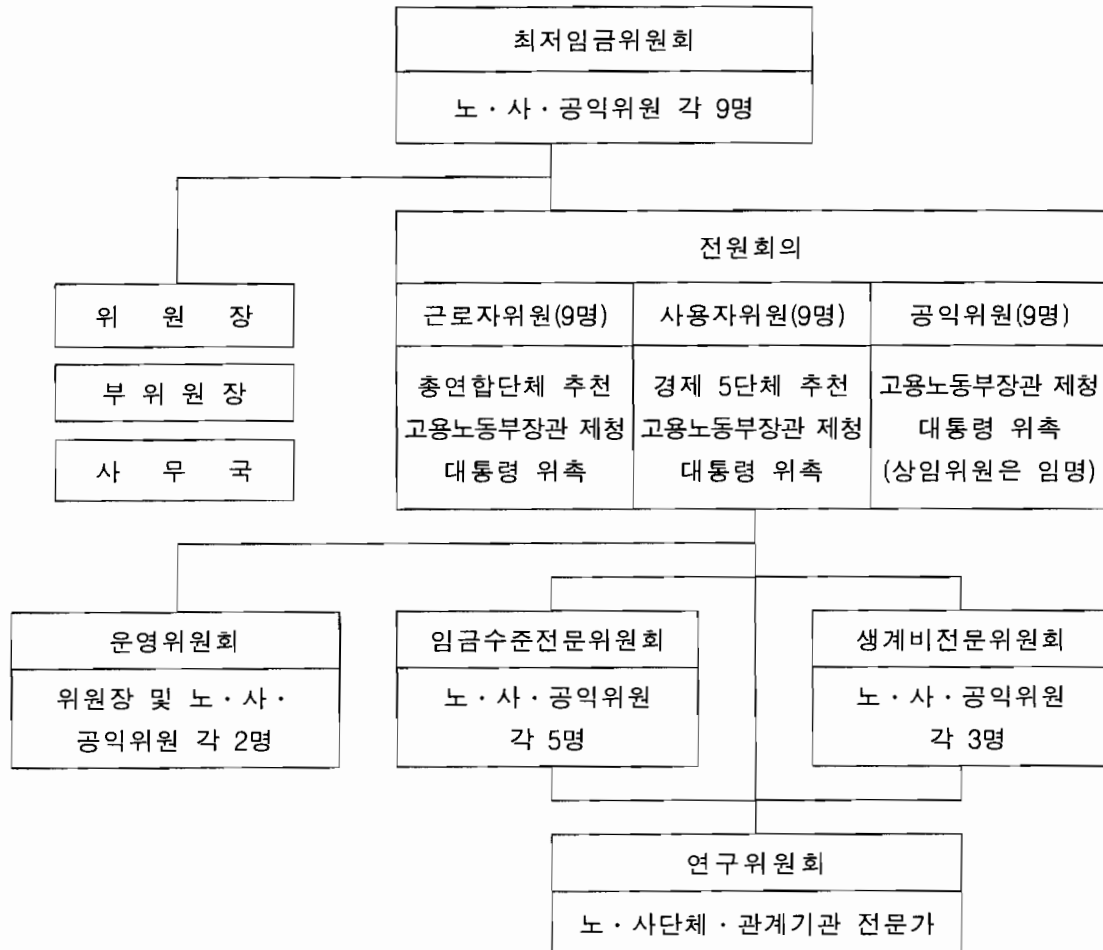
□ 위반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최저임금위원회 개요

1. 근거 : 최저임금법 제12조

2. 기구 및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3. 기능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심의·의결

- 심의·의결절차: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11년의 경우 41~6.29) 심의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절차>

1. 최저임금 심의요청

: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기한: 3.31]



2. 최저임금 심의·의결 및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기한: 요청 후 90일내(6.29)]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3 이상 출석하여야 의결 가능.
단 2회이상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미출석시 의결 가능



3. 최저임금(안) 고시 및 관보게재

: 고용노동부장관 [기한: 접수후 지체없이]



4. <필요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노사단체⇒노동부장관 [기한: 고시후 10일 이내]

※ 이의제기 권한있는 노사단체

- 노: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산업별 연합단체
- 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5. <필요시>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기한: 접수후 20일 이내]

※ 재심의 요청시 10일 이상의 제출기한 부여

※ 재심의 요청이 가능한 경우

-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6. <재심의 요청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및 최저임금(안) 재제출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기한: 요청기한내]

※ 재심의 요청 권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의결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요구 가능
- 단,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요구 불가(최저임금 확정)



7. 최저임금 결정·고시 및 관보게재

: 고용노동부장관 [기한: 8.5까지]

※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및 신문광고

※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8. 효력 기간

: 다음연도 1.1부터 12.31

<붙임 3>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단위 : 원, %, 천명)

연 도	적 용 대 상	최저임금액	인상률	적용대상 근로자수(a)	수혜근로 자수(b)	영향률 (b/a)
1988	10명이상 제조업	(1그룹)시간급 462.50 일급 3,700 (2그룹)시간급 487.50 일급 3,900		2,267	94	4.2
198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600 일급 4,800	평균 26.3 1그룹 29.7 2그룹 23.1	3,053	328	10.7
1990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690 일급 5,520	15.0	4,386	187	4.3
1991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820 일급 6,560	18.8	4,556	393	8.6
1992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925 일급 7,400	12.8	4,620	392	8.5
1993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005 일급 8,040	8.6	5,045	228	4.5
'94.1~ '94.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085 일급 8,680	8.0	4,916	102	2.1
'94.9~ '95.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170 일급 9,360	7.8	4,864	103	2.1
'95.9~ '96.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275 일급 10,200	9.0	5,381	103	1.9
'96.9~ '97.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400 일급 11,200	9.8	5,240	127	2.4
'97.9~ '98.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485 일급 11,880	6.1	5,350	124	2.3
'98.9~ '99.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525 일급 12,200	2.7	5,136	23	0.4
'99.9~ '00.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명이상)	시간급 1,600 일급 12,800	4.9	5,031	54	1.1
'00.9~ '01.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명이상)	시간급 1,865 일급 14,920	16.6	6,692	141	2.1
'01.9~ '02.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100 일급 16,800	12.6	7,152	201	2.8
'02.9~ '03.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275 일급 18,200	8.3	13,216	849	6.4
'03.9~ '04.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510 일급 20,080	10.3	13,631	1,035	7.6
'04.9~ '05.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840 일급 22,720	13.1	14,149	1,245	8.8
'05.9~ '06.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100 일급 24,800	9.2	14,584	1,503	10.3
'07.1~ '07.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 일급 27,840	12.3	14,968	1,784	11.9
'08.1~ '08.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 일급 30,160	8.3	15,351	2,124	13.8
'09.1~ '09.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 일급 32,000	6.1	15,882	2,085	13.1
'10.1~ '10.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110 일급 32,880	2.75	16,103	2,566	15.9
'11.1~ '11.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320 일급 34,560	5.1	16,479	2,336	14.2

주 : · 전체 근로자 기준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치임
·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를 의미함